

4. 도시계획국

가. 일반회계(성질별)

(단위 : 백만원)

성 질 별	'97 예산안		'96 당초예산액		증 △ 감	
	금 액	구성비 (%)	금 액	구성비 (%)	금 액	%
계	1,525	100	2,111	100	△586	△27.7
경 상 액 산	387	25.4	386	18.3	1	0.3
인 권 비	170	11.1	175	8.3	△5	△2.9
관 서 운 영 비	65	4.3	60	2.8	5	8.3
경 상 적 경 비	152	10.0	151	7.2	1	0.7
사 업 예 산	1,138	74.6	1,725	81.7	△587	△34.0
국고 보조 사업	0	0	0	0	0	0
지방양여금사업	0	0	0	0	0	0
시비 보조 사업	0	0	0	0	0	0
자 체 사 업	1,138	74.6	1,725	81.7	△587	△34.0
채 무 상 환	0	0	0	0	0	0
지 방 채 상 환	0	0	0	0	0	0
채무부담행위상환	0	0	0	0	0	0
예 비 비 등	0	0	0	0	0	0
예 비 비	0	0	0	0	0	0
기 타	0	0	0	0	0	0

◇ 검토의견

- 도시계획국소관 '97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15억2천5백만원으로 '96당초예산액 21억1천1백만원보다 27.7%인 5억8천6백만원이 감소되었으며, 성질별 내역은
 - 경상예산이 '96당초대비 0.3% 증가한 3억8천7백만원
 - 사업예산이 34% 감소한 11억3천8백만원이 계상되었음.

- '96 당초예산대비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,
 - 경상예산은 관서운영비 및 경상적경비에서 1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,
 - 사업예산은 항공사진촬영과 판독연구개발비에서 1억1천9백만원등이 증가 하였으며, 자체사업비에서 5억8천7백만원이 감소하였음.

- 도시계획국소관 일반회계 예산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볼 때, 인건비 및 부서운영비, 업무추진 관련경비등을 계상한 것으로 특이한 문제점은 없으나, 도시재개발사업기금적립액 10억원은 도시재개발법 제53조 및 시행령 제54조와 관련 도시계획세의 10%이상 적립할 수 있는 만큼 도시계획세 227억6천만원의 43.9%만 계상한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됨.

나. 특별회계

(1) 전문연구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

○ 세 입

(단위 : 백만원)

관 항 별	'97 예산안		'96 당초예산액		증 △ 감	
	금 액	구성비	금 액	구성비	금 액	%
계	570	100%	542	100%	28	5.2
경상적 세외 수입	363	63.7	347	64.0	16	4.6
이익자수입	7	1.2	1	0.2	6	600
기타 사업 수입	356	62.5	346	63.8	10	2.9
임시적 세외 수입	207	36.3	195	36.0	12	6.2
이익원금	207	36.3	195	36.0	12	6.2

○ 세 출

(단위 : 백만원)

성 질 별	'97 예산안		'96 당초예산액		증 △ 감	
	금 액	구성비	금 액	구성비	금 액	%
계	570	100	542	100	28	5.2
경 상 예 산	1	0.2	2	0.4	△1	△50
인 건 비	0	0	0	0	0	0
관 서 운 영 비	0	0	0	0	0	0
경 상 적 경 비	1	0.2	2	0.4	1	△50
사 업 예 산	533	93.5	533	98.3	0	0
국 고 보 조 사 업	0	0	0	0	0	0
지 방 양 여 금 사 업	0	0	0	0	0	0
시 비 보 조 사 업	0	0	0	0	0	0
자 체 사 업	533	93.5	533	98.3	0	0
채 무 상 환	0	0	0	0	0	0
지 방 채 상 환	0	0	0	0	0	0
채 부 부 담 행 위 상 환	0	0	0	0	0	0
예 비 비 등	36	6.3	7	1.3	29	414.3
예 비 비	36	6.3	7	1.3	29	414.3
기 타	0	0	0	0	0	0

◇ 검토의견

(1) 전문연구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

○ 전문연구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'97 예산안규모는 5억7천만원으로 '96당초예산액 5억4천2백만원보다 5.2%인 2천8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,

○ 주요 증감내역은

- 세입예산중 한국원자력연구소 부지조성사업에서 1천만원, 순세계 잉여금등에서 1천2백만원등이 증액 계상되었으며,

- 세출예산은 예비비에서 2천9백만원이 증액된 사항이외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.

(2)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

○ 세 입

(단위 : 백만원)

관 항 별	'97 예산안		'96 당초예산액		증 △ 감	
	금 액	구성비	금 액	구성비	금 액	%
계	4,914	100%	7,125	100%	△2,211	△31.0
경상적 세외 수입	1,118	22.8	1,251	17.6	△133	△10.6
이 자 수 입	100	2.1	100	1.4	0	0
기타 사업 수입	1,018	20.7	1,151	16.2	△133	△11.6
인시적 세외 수입	3,796	77.2	5,874	82.4	△2,078	△35.4
이 월 금	3,296	67.1	5,374	75.4	△2,078	△38.7
과 년 도 수 입	500	10.1	500	7.0	0	0

○ 세 출

(단위 : 백만원)

상 질 별	'97 예산안		'96 당초예산액		증 △ 감	
	금 액	구성비	금 액	구성비	금 액	%
계	4,914	100%	7,125	100%	△2,211	△31.0
경 상 예 산	0	0	0	0	0	0
인 건 비	0	0	0	0	0	0
관 서 운 영 비	0	0	0	0	0	0
경 상 적 경 비	0	0	0	0	0	0
사 업 예 산	4,914	100	7,125	100	△2,211	△31.0
국고 보조 사업	0	0	0	0	0	0
지방양여금사업	0	0	0	0	0	0
시비 보조 사업	0	0	0	0	0	0
자 체 사 업	4,914	100	7,125	100	△2,211	△31.0
채 무 상 환	0	0	0	0	0	0
지 방 채 상 환	0	0	0	0	0	0
채 무 부 담 행 위 상 환	0	0	0	0	0	0
예 비 비 등	0	0	0	0	0	0
예 비 비	0	0	0	0	0	0
기 타	0	0	0	0	0	0

◇ 검토의견

(2)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

-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'97예산안규모는 49억1천4백만원으로 '96 당초예산액 71억2천5백만원보다 31%인 22억1천1백만원이 감소하였으며,
- 주요 증감내역은
 - 세입예산중 환지청산금이 5억원 증가하였고, 체비지의 매각수입과 순세계 잉여금에서 27억1천1백만원 감소하였음.
 - 세출예산은 봉명장대지구 사업시작으로 인하여 27억8천2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, 기타 지구의 사업은 거의완료 단계로 인하여 사업비가 감소계상되었음.
-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를 전반적으로 검토해 볼때,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, 봉명·장대지구 개발관련 신교통수단 연구개발비 5천만원은 산업정책심의관실에서 추진한 '97 예상편성 대상 용역사업의 심의 결과인 4천5백만원의 예산액과 상이하므로 심의 요구 및 예산계상업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.